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 정보운동 액트 ACT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ACTON

2009년 제3호

HUMA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ACTON

정보운동액트온 | **Act On**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통권 제7호 | 2009년 제3호



코드 : COLD

cold [kóuld] a : 추운, 찬, 차가운, n : 추위, 냉기, 감기

추운 겨울입니다. 서울은 지난 12월 18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도 지하철과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과 따뜻한 집, 그리고 옷이 있어서 오랜 시간 추위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옛날에 태어났으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까지 이십리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되다는 느낌이 옵니다. 옛 사람들은 추위에 '동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추위를 경계하였지만 현대의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자는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알아보고 식당이나 카페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손잡이나 문고리에 손이 닿았다면 알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연이라도 재채기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하루 8번 손씻기는 기본이고, 집에 돌아왔다면 샤워는 필수겠죠. 신종플루에 걸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어떨까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은 친구들과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누고 싶은 그림이나 음악, 시 등의 저작물도 사적으로만 주고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댓글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게시판에 저작물을 올리면 더 이상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폰을 들고 있어도 즐길 수 있는 것,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 한 것이거나 건전한 것뿐입니다. 미네르바를 필두로 그 많은 이들이 처벌받고 게시물을 삭제당했는데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겠죠.

겨울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 신종플루와 인터넷 위축효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병과 범죄와 악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며 안심하라고 합니다. 신종플루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이들에게 정부는 그저 "믿어 달라"고 외칩니다. 소아용 타미플루 재고량 '0'의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 글을 작성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인터넷으로, 스마트 폰으로 비판은 하지 말고 그저 쇼핑만 하라는 정부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옛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겨울이 추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2009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춥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견디고 우리 모두 따뜻한 봄, 다시 만납시다.



LARON : picotera@jinbo.net

계간 정보운동 액트는 ActOn  
통권 제7호 | 2009년 제3호

발행일 2009년 12월 21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사진 박김형준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picotera@jinbo.net](mailto:picoter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 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y](http://www.freeuse.or.kr/license/2,0/yy)

표지의 크리스마스 벡터 이미지는 Dryicons(<http://dryicons.com>)의 이미지를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 차례

통권 제7호 | 2009년 제3호

#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코드 : COLD (라론) · 3

##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홍지) · 8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최용준/변진옥) · 11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 18

## section 10. chilling effect : 얼어붙은 인터넷, 위축되는 인권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소추로 표현과 비판의 자유 위축 (장여경) · 26

사이버와 인권 (장여경) · 45

진보 진영의 진지가 되려다 (덩야핑) · 60

## section 11.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불편하게 살자!!! (이종회) · 68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10대 뉴스 · 70

2009 - 진보네트워크센터 · 76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Redacted]

[Redacted]

[Redacted]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홍지) · 8

[Redacted]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최용준/변진옥) · 11

[Redacted]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 28

#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 치료제 수급 대책의 실패와 관련하여

홍지 (진보네트워킹센터)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쁘는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 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롭힘’ 따위로 폄하하는 이러한 독단적 시각은, 1년 전 온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 때의 그 모습과 한 치도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때문이었다. 공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을 둘러싼 논의에서, 우리 사회는 정부 관료들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판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질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때

와 변함없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주장은 단지 ‘괴담’ 또는 ‘좌파의 선동’ 째므로 치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처방 방침을 둘러싼 논의이다. 8월 15일 국내에서 신종 플루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오히려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지침을 대폭 제한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제만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국내 비축분량이 인구 대비 5%도 안 되는 약에 대해 남용과 그에 따른 내성 발병이 우려된다는 ‘불안’ 을 지속적으로 퍼뜨려나갔다. 그러나 추석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본격화 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처방 지침을 대폭 확대하여 일반 병원 및 약국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및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약에 대한 ‘불신’ 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으며, 이 때문에 치료제를 제 때에 투약하지 않아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결국 복지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내성 발병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며, 국민들에게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투약을 적극 권장하기에 이른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모순은 ‘타미플루(Tamiflu)’ 강제실시와 관련된 논의에서 극에 달한다. 지난 4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약에 대한 강제실시를 요구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조류 독감’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5년부터 정부 스스로도 타미플루의 공급 부족 문제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며 자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7월 이후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타미플루의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8월 21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발언 사흘 만에 전재희 장관은 돌연 “국제사회의 신뢰” 를 운운하며 발언을 번복하였고, 9월까지 국내에 충분한 타미플루 비축분이 입고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내 공급불가를 밝혀온 제약회사가 복지부 장관의 강제실시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꿔 약의 즉각적인 공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강제실시’ 의 효과를 누구보다 톡톡히 본 복지부는 이후 강제실시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 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9월까지 국내에 타미플루가 충분히 비축될 거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11월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11월 1일부터 하루 평균 타미플루 신규 투약이 10만 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타미플루의 정부 비축분은 80만 명

분 뿐이었다. 이마저도 성인용 타미플루에 한한 것이며, 소아용 타미플루의 경우 지난주 국내 재고량이 ‘0명’ 분이었다.

이미 시중에서는 타미플루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현실화된 상태였다. 정부는 타미플루 내성 발현에 대비한 또 다른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리렌자(Relenza)’의 처방을 적극 권장했으나, 의사들이나 환자들 모두 이를 꺼려하였다. 한편에선 타미플루의 국내 판매처인 한국 로슈(Roche)가 약을 사재기하여 식약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11월 17일 정부는 새로 입고되는 10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미포장 상태로 긴급 수입될 것이라 발표했으니, 정부 스스로 당시 타미플루의 수급 상황이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움을 시인할 꼴이다.

질병의 ‘유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의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패의 주범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이다. 입고 일자조차 정확히 명기되지 않은 제약회사와의 계약서 한 장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걸어 놓고서도, 작금의 사회적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 정부는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얼굴을 내보이면서 “우리를 믿어 달라!”라고 말하는 전재희 장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소통은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이 의지했던 것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뿐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하였는가?

#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sup>1</sup>

최용준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1. 국민의 건강과 특허 그 특별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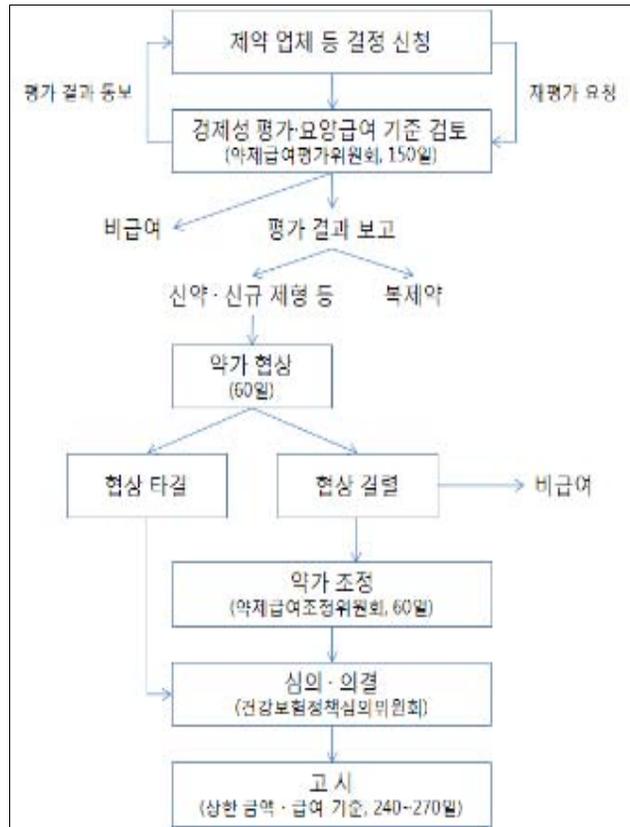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 (OECD 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sup>2</sup>.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sup>3</sup>.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1 이 글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행한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2009)에 실린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의 특허발명 사용의 필요성' (pp.14-21)을 필자들의 동의 하에 편집인이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2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06.05.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OECD Health Data 2008.



〈그림 1. 건강보험 의약품 등재 절차〉

제약 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으면 대체로 해당 의약품의 보험 등재 신청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제약 기업으로서는 자사의 제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등재되면 판매에 유리해진다. 이 때 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상 결과 약가가 결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심의·의결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약가를 고시한다. 그러나 필수 의약품으로 인정된 의약품을 둘러싸고 공단과 기업의 가격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협상 결렬 이후 60일 안에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 조정과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약가가 고시된다. 물론 필수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약품은 비급여로 처리된다(그림)<sup>4</sup>.

4 양준호. 건강보험 약가 관리 전반기와 약제비 적정화. 제29차 약업 경영 세미나 〈최근 의약품 허가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발표문. 2008년 4월 28일.

이러한 약가협상 방식은 국내 시장이 주 무대인 국내 제약회사에 비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비싼 특허 신약의 가격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순수하게 제품에 기반을 두었을 때, 제약회사의 협상력은 그 제품이 가지는 가치와 시장에서 다른 경쟁 상품들의 유무 및 그것과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반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그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에 의존한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이 시장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나 생명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구매자의 협상력은 제약 기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에서의 선택은 결국 제약 기업이 원하는 약가를 책정하든지, 아니면 보험으로 약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 비해 한국과 같은 작은 시장은 현행 약제비 절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특허 신약을 가진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동일약가 정책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부 약에 대해 가격조정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 특허 신약들은 그것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접근권의 문제는 물론,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수급 문제에서 ‘특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막대한 개발비용에 비해 일단 개발된 후에 이 결과물을 복제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둘째, 의약분야에서는 특허에 의한 독점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의약품 특허가 물질특허로서 주 활성물질인 물질 자체가 의약품이라는 완제품에 오롯이 특허가 부여되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전자.기계와 같은 분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완제품에 대한 기술독점을 지니기 어려운 반면, 의약 분야에서는 하나의 특허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독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생명에 관계된 의약품일수록 특허는 과도한 독점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지구상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접적 영향을 받아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는 명백한 효용을 가진다.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빠르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 2.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주체정부

보건의료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진입 장벽의 존재, 공급의 독점, 외부 효과 등 시장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기전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대체 불가능한 의약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 할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의약품의 허가, 유통, 가격, 선별 등 많은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다. 제약 기업이 일방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대유행과 같은 상황처럼, 단시간에 의약품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생산량 또는 가격의 문제로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현재로서 강제실시(특허법 제106조, 제107조)가 유일하며, 그것도 정부에 의한 특허 발명의 사용(특허법 제106조)이 제일 실현가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정부와 제약회사 간 가격 협상이 결렬되고 그로 인한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 현 특허법 제107조<sup>5</sup>에 의거한 강제실시 청구, 즉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직접 강제실시를 청구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제실시를 청구한 시민사회단체는 위탁 생산이나 수입을 고려하였으나, 강제실시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공제약회사도 아닌 사기업이 약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할 리는 없었다.

특허청은 두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의약품의 공급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체가 실시<sup>6</sup>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글리벡과 푸제온의 강제실시 청구 사례에서 살펴보면 사기업인 제약회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실시를 청구할 동기가 전혀 없고, 약이 필요한 환자단체나 제약회사의

---

5 특허법 제107조는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에 관한 조항으로써, 특허청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를 비롯한 5가지 사유에 대해 특허청장이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실시(實施)’란 특허 받은 발명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특허법 제2조) 또한,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탐욕을 고발하는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산 및 수입을 할 능력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 환자와 시민단체에게 강제실시가 허락되어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국내 제약회사들은 초국적 제약회사와 여러 의약품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특허소송 등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므로, 정부의 보증 없이는 강제실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두 사례들은 의약품의 경우 강제실시의 주체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 신종 플루 대유행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 단체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에 대한 강제 실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타미플루는 공급사인 로슈(Roche)의 생산량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정부가 신종 플루의 빠른 확산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1월경이면 약이 바닥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제네릭(generic) 의약품<sup>7</sup>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내 제약회사 중 단 1곳도 특허법 제107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의약품의 허가, 보험등재여부, 가격결정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법 제107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약품의 가격 결정과 공급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정부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문화되다시피 한 특허법 제106조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 3. 통상마찰과 의약품 강제실시

강제실시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합법적인 조치이며, 특정 국가의 강제실시의 시행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이하 TRIPs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sup>8</sup>. 특히 강제실시에 따른 분쟁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제도를 통

---

7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복제약 또는 카피(copy)약이라 불린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거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특허를 가진 제약 회사 외의 다른 제약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같은 효능을 지닌 특허 의약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일례로 스위스계 초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생산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eevec)’은 2003년 국내 가격이 한 알에 23,035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인도의 제약회사 ‘나코(Natco)’가 생산하는 글리벡의 제네릭 의약품인 ‘비낫(Veenot)’ 한 알에 2달러, 약 2천원 정도였다. 당시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845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8 Chaudhuri, Sudip., *The WTO and India's Pharmaceuticals Industry: Patent Protection, TRIPs, and Developing Countrie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sup>9</sup>.

2001년, ‘도하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선언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권리, 특히 모든 사람의 의약품 접근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실행되어야 함과 강제실시를 부여할 권리와 그 ‘요건(grounds)’을 결정할 주권이 각 회원국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언문 4절은 “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는 점에 합의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 배경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의한 무역보복 등을 염려하여 강제실시를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이 배경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에 대해 무역보복이 행해지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제기를 넘어 도하선언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필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sup>10</sup>.

강제실시가 실제로 국제적 수준의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정 국가에 경제적·사회적 해를 끼친 사례 역시 거의 확인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강제실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해를 입은 경우는 없거니와, 무엇보다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같이 강제실시를 시행한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모두 강제실시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낮으며, 강제실시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역시 그 순기능 및 혜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예증하고 있다.

2006년~2007년간 총 7회의 의약품 강제실시를 실행한 태국은 강제실시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 강제실시가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태국 보건복지부는 강제실시로 인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강제실시 전후의 대미(對美) 무역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강제실시가 무역 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태국에서의 강제실시는 향후 5년 간 약 225,500,000달러(USD)의 보건 재정 지출을 절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약 50인의 정부 관계자, 학자, 사업가에게 강제실시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계 및 재계의 전문가들은 강제실시 정책

---

9 Ho, Cynthia M. "Patent Breaking or Balancing? Separating Strands of Fact from Fiction Under TRIP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Vol. 34, 2009.

10 WHO, Improving Access to Medicines in Thailand: The use of TRIPs flexibilities, 2008.

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1</sup>.

#### 4. 특허법 제106조의 개정 의미

신종 플루 사태에서 제기된 타미플루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 및 “기술개발 의욕 저하” 라는 추상적 근거만 내세우며, 강제실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현행 특허법에서도 정부의 특허 발명 실시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 로 극히 제한시켜 놓았기에,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정부의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고 제약 기업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강제실시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막론하는 국제적 관행이며, WTO의 TRIPs 협정이나 도하 선언 등 국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바다.

단일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필수약제에 대한 최대의 공급자로서, 의약품 수급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이다. 즉,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접근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의약품, 특히 특허 신약을 공급하는 초국적 제약 기업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이들과의 협상수단의 부재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에 대한 현 특허법의 규정은 특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WTO가 채택한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선언문』 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을 규정한 현행 특허법 제106조의 개정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해야 할 의무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 노력임과 동시에, 국제적 차원의 제도적 논의를 국내에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

11 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 "The implications of Thailand's compulsory licensing policy, 2006-2008", Conference Presentation: Seoul, 2008 September.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 확대해야 할 필요성<sup>12</sup>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1. 특허법의 목적과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실시제도의 취지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따라서 특허권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와 특허법

---

12 이 글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행한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2009)에 실린 '총론' (pp.3-8)을 필자의 동의 하에 편집인이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특허권은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를 넘어 특허 본래의 목적인 산업발전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정부 실시나 통상실시권의 재정은 특허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특허권의 남용을 규제하고 특허권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며, 특허권 제도 전체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2. 현행 특허법 규정의 제한성과 사인에 의한 공공의 이익 실현의 비실효성

특허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등)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 특허법 제106조와 제107조는 강제실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조정·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6조는 정부의 특허 수용·사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로 제한하고 있다. 비록 수용은 국방상 목적으로 한정하였지만, 수용과 사용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실시를 같은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특허 사용(실시)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비상시를 요건으로 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사용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54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 제106조에서, 제107조의 재정(裁定)에 의한 강제실시권과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추가한 이유는 재정청구에 의한 경우 긴급사태라 하더라도 재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체계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한 특허 사용에 있어 정부의 사용을 제3자의 사용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06조는 제3자 사용보다 요건을 정부 사용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 제107조의 재정실시는 비상시를 중복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반해, 제106조 정부 실시의 경우에만 비상시를 중복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부 실시의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제107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 재정 제도는 주로 특허권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3년 이상의 불실시, 불충분 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 필요한 경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실시권은 주로 이윤 동기가 지배적인 사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sup>13</sup>. 즉,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확보하는 방식의 제한적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

13 제107조제1항의 재정실시 청구자에 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106조제1항제2호와 제107조제1항제3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특허법 개정에서 현행 제106조제1항제2호를 새롭게 규정한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제107조의 청구권자에는 정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일본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 특허법 제106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규정 방식이 다름.

실현을 위한 특허 실시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특허 실시의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107조의 규정은 활용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실시에는 상당한 자금과 물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공공의 요구를 경제성 판단에 종속시키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3. 국제인권규약 상 지적재산권의 공익실현에 관한 국가의 의무

2001년 12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성명서<sup>14</sup>를 채택하고, “지적재산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결론을 제시했다.(성명서 18항) 또한 2001년 UN경제이사회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촉진 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인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TRIPs협정이 건강권, 식품권과 자결권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한 인권보호의 국제적 의무가 경제무역정책과 국제무역협정에 우선함을 중시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무역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원칙과 국제인권의무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sup>15</sup>.

2005년 UN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 제1항(c)<sup>16</sup>에 관한 『일반논평 17』을 채택하였는데, 일반논평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은 인권인 ‘저자의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저자의 권리’는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논평 17』은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당사국은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한편으로는 제15

14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December 2001, E/C.12/2001/15.

15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16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만든 모든 과학, 문화, 예술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통해 혜택을 받을 권리

조 1(c)항의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는 규약 상 다른 규정의 의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익형량에 있어, 저자의 사익이 부당할 정도로 선호되어서는 아니 되며 창작물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향유할 공익이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략) 궁극적으로 지적 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은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sup>17</sup>

#### 4. TRIPs 협정에 근거한 특허법의 개정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TRIPs 협정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의 인정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사전 협의 없이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는 실시가 허용된다. 특허법 제106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요건은 전시상황과 더불어 TRIPs 협정상의 표현인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협정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협정에서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public non-commercial use)이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상황’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과 별개의 요건으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이를 중복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이 국가 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TRIPs 협정 당시 협약 당사자들은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 과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은 질적으로 다른 규정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협정의 논의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협

---

17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06 193쪽 참조

정 제31조b)의 사전협상의무 규정과 관련한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사전 협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의 결과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강제실시권 발동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시에는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특허 검색 없이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권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sup>18</sup>. 만약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이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사전협상 의무와 관련해서 두 경우를 절차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협정의 당사국들이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규정과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이라는 규정을 명백히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예로서 정부가 실시하는 우주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거론한 바 있으며, 우주개발사업이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일정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TRIPs 협정의 강제실가 긴급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협정 제31조에서 제시한 범주들은 제한적 열거(exhaustive)가 아니라, 예시적(illustrative) 규정이라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sup>19</sup>. TRIPs 협정이 발효(1995. 1. 1.)된 이후인 1995. 12. 5. 선고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1996 GRUR 190, 192, 28 IIC 242 (1997))도 독일 특허법상의 ‘공공의 이익’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긴급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도하선언문, 2001년 WTO 각료회의 채택)은 “각 회원국들은 강제실시권을 허용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실시권이 허용될 근거를 결정할 자유를 지닌다.”라고 하여 회원국 재량에 의하여 강제실시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하선언 5단락(c)는 협정 제31조(a)의 ‘국가긴급사태, 극도의 위기 상황’을 ‘공중의 건강이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협정

18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2004, 191쪽

19 Ebenezer Durojaye, "Compulsory license and Access to medicine in post DOHA era: What hope for Africa?", Netheland International Law Review, LV:33-71, 2008;

제31조가 결코 강제실시의 적용을 긴급 상황에 한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sup>20</sup>.

## 5. 특허법 제106조 개정의 필요성

정부는 특허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익과 특허권 제도의 통한 공익 실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특허권자자 배타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사회적 활용 촉진이라는 법 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제106조의 ‘비상시’라는 요건의 엄격성과 제3자 청구를 전제하는 제107조의 제한성으로 인해, 경제성 없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상의 공백과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TRIPs 협정 발효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협정의 내용마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1995년의 개정(1995.12.29 법률 제5080호)은 국방상 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한정하는 소극적인 개정이었으며, 2005년의 개정(2005.5.31 법률 제7554호)은 수용을 국방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를 추가하였으나 비상시의 요건과 중복하여 요건을 설정한 제한적인 개정이었다.

때문에 현행 제106조 규정을 TRIPs 협정에라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20 위 Ebenezer Durojaye(2008) 및 Richard Gold and Danial K. Lam, "Balancing Trade in Patents: Public Non-Commercial Use and Compulsory Licensing", 6 J. of World Intell. Prop. 5 (2003) 등 참조

Section 10.

chilling effect : 얼어붙은 인터넷, 위축되는 인권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소추로 표현과 비판의 자유 위축 (장여경) · 26

사이버와 인권 (장여경) · 4

진보 진영의 진지가 되려다 (명야핑) · 64

##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 형사소주로 표현과 비판의 자유 위축<sup>21</sup>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Chang, Yeo-Kyung / Jinbonet activist

### 1. 개요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기준으로 3,482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2.2%에 달한다.<sup>22</sup> 일부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제외하고<sup>23</sup>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저녁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

---

21 2009년 10월 13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22 ITU, 2008.6, <http://www.itu.int>. 한글 자료는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2KAAA13&org\\_id=101&vwcd=MT\\_ZTITLE&path=운수·통신·관광&oper\\_YN=Y&item=&keyword=인터넷 이용자수&lang\\_mode=kor&list\\_id=&olapYN=N](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2KAAA13&org_id=101&vwcd=MT_ZTITLE&path=운수·통신·관광&oper_YN=Y&item=&keyword=인터넷 이용자수&lang_mode=kor&list_id=&olapYN=N)

23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공중파방송 KBS 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 채널>, 위성방송의 <시민방송 R-TV>, 케이블방송의 지역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표현하고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정보화의 가장 놀라운 혜택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한국에 상용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개시되던 1994년 발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오늘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심의회가 인터넷 표현물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또한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 현행법률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게시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시 조치(temporary measure or deletion)’ 제도를 정부나 여권에서 이용하면서 이들을 비판한 많은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많은 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최근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2. 행정 심의

한국은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회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다. 현재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회는 2008년 새정부 들어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sup>24</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유해 정보를 규제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25</sup> 심

---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전에는 1994년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맡아 왔다. 2007년 대법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판결.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에 따라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게시물의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한다.

의 결과는 각 인터넷 사업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권고 등 시정 요구의 형태로 전달된다. 시정 요구는 형식적으로 권고이지만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부되는 일이 거의 없다.<sup>26</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성은 음란·명예훼손·위협·서비스방해·청소년유해매체물·사행행위·국가기밀·국가보안법 위반·범죄 교사 및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심의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사자가 아닌 게시판 운영자나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정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나 회의록 공개도 사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왔다. 행정부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하에 자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불법성도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는 특히 위헌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에도 위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과거 ‘불온 통신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며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자의적 행정심의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sup>27</sup>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sup>28</sup>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심의 기준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의하면, 음란·명예훼손·위협·서비스방해·청소년유해매체물·사행행위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기밀·국가보안법·범죄 교사 및 방조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서비스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7 2001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탈학교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을 폐쇄하였다. 아이노스쿨은 2000년 11월 개설되어 학교를 자퇴하였거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의견과 정보를 나누던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폐쇄한다고 밝혔다. 자퇴 조장, 학교 비판 등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사전 고지나 의견 제시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보내진 시정요구 공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28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 확인, 2002.6.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족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2008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sup>29</sup> 문제의 게시물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에서 필자가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 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은 심의위 출범 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의 결과였다.

2-2.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고 보았다.<sup>30</sup> 그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해 이듬해 2월에 유죄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광고주 목록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sup>31</sup>

---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제4차 회의록, 2008.5.28. 회의록에 따르면 이 시정 요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심의를 요청한 총199건의 ‘VIP’ (대통령) 관련 게시물 중 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대통령 비방에 대한 게시물들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내려왔다.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제9차 회의록, 2008.7.1. 이 시정 요구는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80개 게시물에 대한 판단이었고 그 세부 분류에 따라 21건에 대해서는 ‘각하’되거나 ‘해당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 인터넷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권고하였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문에 따라 ‘광고주 목록’ 게시물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를 시행하였다. 광고주 기업의 명칭, 공개된 전화번호를 게재한 게시물은 물론 ‘광고주 목록’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삭제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인터넷 사이트 ‘다음’은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600건 이상을 지웠다. (한겨레 2009.7.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

31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될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계제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판결, 2009.2.19.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Daum 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님들이 작성하신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7월 2일자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시정요구를 통보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사례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바, 특정 언론매체의 광고주 리스트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조치 됩니다.

해당 게시물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경고 조치하며, 경고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Daum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54196>

●문제된 글 : 아고라>토론>자유토론  
글 번호 : 1754196 [청찬합시다] 경향신문 7월 26일자 광고주 목록 | 2008.07.28

●해당 게시글의 신고자 : 조선일보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29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삭제일자 : 2008년 7월 29일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삭제 경고문

2-3. 2009년 1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sup>32</sup> 문제의 게시물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9년 1월 2일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였다. 김 지사는 심의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삭제를 결정하였다.

2-4.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환경운동가가 ‘쓰레기 시멘트’ 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게시자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페쓰레기를

32 심의위는 명예훼손에 대한 의결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결 일자 는 미상이다. ZDNet 2009.4.29.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시멘트에 다량 함유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의위는 게시자가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시멘트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실험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sup>33</sup>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 일부

2-5. 200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해당 경찰의 사진과 이름 등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라고 보았다.<sup>34</sup>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제9차 회의로 알려졌다. 2009.4.27.

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제12차 회의. 2009.6.10. 진보네트워크센터 앞으로 삭제 권고가 도달하여 이 결정을 알게 되었다.

2-6. 그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보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심의위 출범 후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sup>35</sup>

### 3. 형사소추

2008년 이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대통령과 정부, 언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5월 2일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을 발표하였다.<sup>36</sup>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는 등 정부가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으로 보는 게시물들이 괴담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하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sup>37</sup> 그러나 광우병 괴담 수사 이후 현재까지 촛불 시위 혹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입건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다수가 형사처벌되었다. 자주 적용된 법률은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이었는데 1983년 제정된 이 법률 조항은 촛불 수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38

35 이종걸의원 보도자료 2009.3.9. [http://www.ljk.co.kr/bbs/board.php?bo\\_table=think&wr\\_id=801&page=2](http://www.ljk.co.kr/bbs/board.php?bo_table=think&wr_id=801&page=2)

36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04](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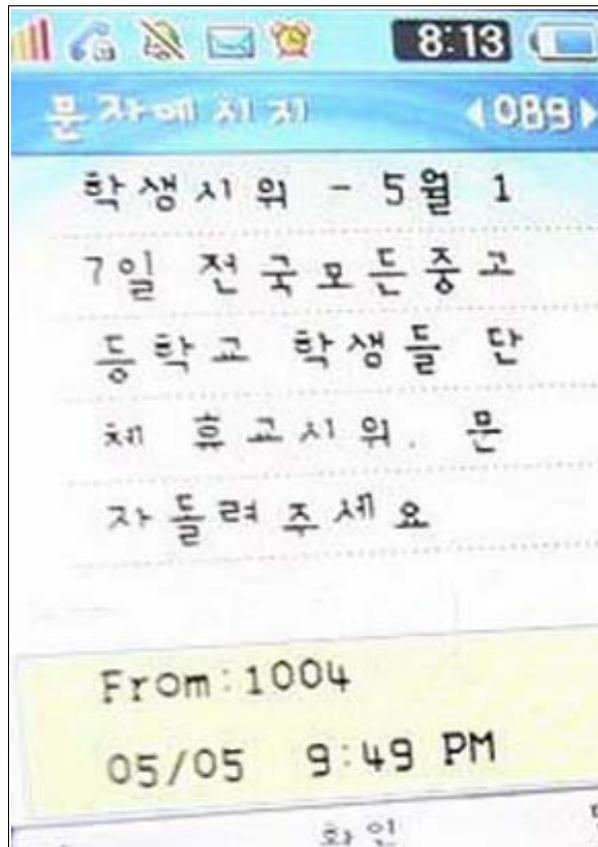
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5.7. <http://minbyun.org/?>

mid=report&page=9&document\_srl=17321&listStyle=&cpage= 반면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광우병 괴담 수사를 ‘냉각 효과’라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902331&cp=nv>

3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어 판례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동맹휴업 문자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http://minbyun.org/?mid=repor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F%B8%EB%84%A4%EB%A5%B4%EB%B0%94&document\\_srl=24906&listStyle=&cpage=](http://minbyun.org/?mid=repor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F%B8%EB%84%A4%EB%A5%B4%EB%B0%94&document_srl=24906&listStyle=&cpage=))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소추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경찰과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한 청소년을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sup>39</sup>



▲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 문자메시지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3476&page=4](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3476&page=4) )

39 쿠키뉴스 2008.5.2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18717&cp=nv> 한국일보 2008.9.2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2002594322000.htm>

3-2. 경찰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인터넷으로 제안하거나 ‘유모차부대’, ‘촛불자동차연합’ 등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네티즌들을 입건하고 가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 혹은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sup>40</sup>

3-3. 경찰은 촛불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위장소 인근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네티즌들을 체포하고 형사입건하였다.<sup>41</sup>

3-4. 경찰은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감상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였다.<sup>42</sup>

3-5. 경찰과 검찰은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강간, 사망설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 다수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고 일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sup>43</sup>

3-6.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2009년 2월 24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sup>44</sup>

3-7. 검찰은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미네르바’ 라는 필명의 네티즌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하고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항소하였다.<sup>45</sup>

3-8. 경찰은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네티즌들을 형사입건하였다.<sup>46</sup>

---

40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겨레 2008.9.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24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240.html), 오마이뉴스 2008.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90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900), 위클리경향 806호, 2008.12.3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041&pt=nv>

41 쿠키뉴스 2008.8.1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000326&cp=nv>

42 한겨레 2008.7.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24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243.html)

43 경찰 보도자료 2008.7.7.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2279&cPage=1&SK=ALL&SW=%B0%B3%C0%CE%C1%A4%BA%B8>, 위클리경향 796호 2008.10.21.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552&pt=nv>

44 서울신문 2009.2.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20008017>

45 세계일보 2009.4.24.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424000283&ctg1=C&ctg2=>

46 뉴스시스 2009.3.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4. 임시조치

대통령, 정부나 여당 인사, 여당 친화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sup>47</sup> 인터넷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의 ‘고지 후 처리’ 절차(notice & take down)와 흡사하지만, 이와 달리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복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복구 요청이 없으면 영구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함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4-1.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청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구글 유튜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sup>48</sup>

4-2.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 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sup>49</sup>

---

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77430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8 한겨레 2008.7.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

49 <http://wnsgud313.tistory.com/156>



▲ 여당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3. 2009년 4월, 여당 의원들을 ‘인두겁을 쓴 이들’ 이라고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이 게시물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담은 언론 기사를 링크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게시자는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sup>50</sup>

50 <http://blog.jinbo.net/gimche/?pid=668>

###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족만을 썼을 뿐이다.  
마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장윤석·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고의방화" "도심테러"... 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미유주현 최혜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미어  
공성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한나라 "철거민들, 지난 4월에 민노당 집단입당"**

**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민주당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청와대, 김석기 내정 철회 안 한다** (참세상, 미꽃맘 기자, 2009년 01월 22일 17시 55분)  
**[살인진압] "국민 생명을 청장 자리값만도 못하게 생각"**

**"재2의 견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대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 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약자를 위해 살겠다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참세상, 미꽃맘 기자, 2009년 01월 21일 21시 15분)  
**[기자회견]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 ▲ 여당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4. 2009년 4월,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되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인터넷 게시물도 조선일보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sup>51</sup> 이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다음'은 이 역시 임시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

5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0524>

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게시물은 원상복구되었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네티즌들의 글 수백 건이 임시조치되었다.<sup>52</sup>

4-5. 2009년 5월, 경찰의 폭력을 비판한 게시물 다수가 해당 경찰 간부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3</sup>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 5. 인터넷 실명제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5-1.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sup>54</sup>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sup>55</sup>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

---

52 <http://blog.daum.net/cangmin/15706553>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임시조치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등 총 298건이고,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http://blog.daum.net/moonsoonc/8494304>

53 오마이뉴스 2009.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765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7658), 프레스리안 2009.5.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

54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와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55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 참세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2009.2.26.

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sup>56</sup> 2009년 2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sup>57</sup>,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설정의 이용자의 글쓰기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 이 늘고 있다.<sup>58</sup>

5-3.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sup>59</sup>

---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와 제76조(과태료) 이 법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지칭한다. 이 제도는 다른 이용자의 눈에 실명이 보이지 않지만, 사전에 실명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57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본인확인제의 범위가 전체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62%를 포괄하는 규모에서 90%를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었다.

58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한겨레 2009.8.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9454.html>

59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와 제27조(과태료)

## 6. 이용자 추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6-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sup>60</sup>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19,280 건에 달했다.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게시자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sup>61</sup>

### ▼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2006	48,462	204,071	9	71,024	323,566
2007	57,375	275,338	4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3	1	119,280	474,568

60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61 위클리 경향 797호 2008.10.28.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592>

한겨레 2008.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406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4066.html)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2.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46,667 건에 달했다.

62

▼ 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23,403	108,759	3	44,665	176,830
2005	21,636	118,930	10	54,793	195,369
2006	21,948	87,114	0	41,681	150,743
2007	31,337	110,738	0	41,584	183,659
2008	37,912	128,166	0	46,667	212,74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3.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sup>62</sup>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최소한 2004년부터는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6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6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 영장도 발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sup>64</sup>

▼ 통신수단별 감청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887	265	0	461	1,613
2005	621	1	0	355	977
2006	577	0	0	456	1,033
2007	503	0	0	646	1,149
2008	506	0	0	646	1,15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 7. 법률 개정 예정

이미 도입된 위 제도들 외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7-1.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7-2.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7-3.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data retention)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8. 결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 규제와 형사소추가 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

초기 네티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여주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무한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sup>65</sup>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란은, ‘정부’가 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물 배포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거진다. 오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 사회이지만, 행정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방송·서적·영화·만화 등 고전적 표현물의 뒤를 이어 인터넷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심의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 실명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음란’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선거시기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을 처벌하고 UCC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다. 표현의 자유는 일찍이 근대시 민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주요 표현 수단인 언론과 출판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

---

65 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운 일반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일었던 것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매체로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그러한 이유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압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사이버와 인권<sup>66</sup>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 정부에게는 ‘구글 쇼크’ 라 할 만 했다. 지난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월 1일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후 모두가 구글의 입을 쳐다보던 시점에서였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촛불 쇼크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시점이기도 했다.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은 실명제 대신 한국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업로드를 제한하는 길을 택했다.

한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건이었다. 4월 24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6월에는 쇠고기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보도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김은희 작가 등 관련자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연이어 7월에는 YTN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고 8월에는 경찰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25명의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들 이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구글의 지메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러쉬가 일어났다.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진중권 교수가 다음에 있던 블로그를 구글의 ‘블로그스팟’ 으로 옮

---

66 진보평론 42호(2009년 겨울호)에 실린 글입니다.

기기도 하였다.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행렬은 잠시나마 한국 정부를 조소거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세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인터넷을 국경 내에서 통제하려는 정부의 열망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제는 도달 불가능한 미망이라고 암묵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다. 비록 가상공간에서이지만 인터넷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통제를 비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인터넷은 국가로부터 탈출인가. 전통적인 인권 억압 체제로서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제 효력을 잃고 있는가. 국가의 빈자리에서 이제 인터넷 공간은 자유로운가. 때로는 그 자유도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가.

## 초국적 네트워크

인터넷은 대중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에서부터 이미 지구적인 네트워크였다. 1969년 미국 방성의 알파넷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부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소들의 네트워크로 시작되었지만, 1977년 인터넷에 연결된 처소가 하와이에서 노르웨이까지 이미 국내외를 아울러 50개소 이상에 달했다. 인터넷의 네트워크 방식은 1972년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하여 TCP/IP 프로토콜이 보급된 1982년에는 누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여 서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학재단 네트워크가 알파넷의 뒤를 이어 인터넷의 백bones를 맡게 된 1990년에 한국도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건 국가의 사회적 의무이건, 대체로 인권의 문제가 국가라는 화두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초국적 네트워크의 등장은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존 페리 발로우 같은 사람은 미국 의회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통신 품위법’을 제정한 데 맞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이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 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 반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1996년 2월 8일)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되던 무렵에는 한국 진보운동에도 이와 같은 희망이 넘쳐났었다. 특히 초국적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초국적 네트워크는 초국적 저항과 연대의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멕시코 차아파스 농민 혁명 사례가 많은 영감을 주었다.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맞추어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EZLN)은 차아파스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뜨렸다. 사파티스타가 인터넷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전 세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명을 퍼 나르고, 지지하는 글, 그림, 사진, 오디오, 비디오를 제작하고, 각국 멕시코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식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최초의 포스트모던 혁명’으로 명명했던 사파티스타와 그 인터넷 지지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풀뿌리 국제연대의 모범사례였고,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정치력은, 비트에서 비트로 연결되는 조용한 힘의 축적에 의해 세워졌다(1996년)”고 선언하였다.

사실 이러한 낙관주의는 기술과 인권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주의와 사뭇 다른 것이다. 맑스로부터 기술은 지배의 도구였다. 자본주의 발달 속에 기술은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이용, 보급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공장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를 차가운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맑스는 이에 대해 “자본가의 노동자 지배는 사물의 인간에 대한 지배이고, 죽은 노동의 산 노동에 대한 지배이며, 생산물의 생산자에 대한 지배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러다이트 운동을 거쳐 후대인 해리 브레이버맨이나 데이비드 노블에 이르러서도 역시 신기술은 지배계급의 요청에 따라 고안되고 배치된 죽은 노동이었다. 특히 인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재생산하는 정보화 기술은 자본의 소유주나 대리인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공장 노동자들을 미리 프로그램화된 속도를 쫓아가는 종속적인 위치가 되고, 사무직 노동자들은 감시를 받으며 타자를 칠 수 밖에 없다. 허버트 실러는 사회 전체가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위성, 광섬유, 컴퓨터 네트워크로 인한 미디어 폭발 역시 소수의 미디어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프랭크 웹스터와 케빈 로빈스 역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기업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순응적인 소비자로 길들이기 위해 사용된다면서,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을 가지는 소수자들을 억누르기 위하여 최신 감시기술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정보 기술은 기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자본가들의 의도가 구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닉 다이어-위테포드가 『사이버-맑스』에서 지적하였듯이 저항으로서의 기술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어 왔다. 맑스는 기술에 대한 비판 속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근대 산업이 창출했고, 각지의 노동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줬던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확대되는 노동자들의 연합”이 힘을 얻을 것이라

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낙관들은 특히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발신할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에 이르러 극대화되었다. 지배 권력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소수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다양하게 권력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실현되었던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적 실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기술에 대해서는 이처럼 상반된 전망이 병행하여 존재해 왔다. 한국 진보운동은 인터넷에 대하여 두 가지 전망을 모두 표방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감시에 맞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물론 설립 당시에는 인터넷의 자유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우세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1994년이고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려던 시기가 1996년이었던 만큼 국가의 검열과 감시에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기술에 대하여 병행적 전망을 갖는다고 하여 기술을 정치중립적인 활용 대상으로서만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랭던 위너와 같은 사람은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낙관, 혹은 중립적 견해를 모두 떠나, 핵기술과 같은 거대 기술이 일단 도입된 후 결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권력 과정에 주목한 바 있다. 분명 기술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사물이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권력 투쟁의 장이다. 그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서 기술은 권력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력이 의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오늘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인터넷은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의 낙관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국가 권력의 의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억압적 국가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 촌촌한 진을 쳐 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통제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국가 권력이 발동하는 방식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권력은 직접적이기 보다 간접적이며, 은밀하면서도 방대하고, 폭압적이기 보다 공익적이다.

## 국가의 개입

이명박 정부의 촛불 네티즌에 대한 온라인 추적과 형사적 처벌, 적극적이고 방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그러한 통제적 국가 전략을 실감나게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명예훼손, 네티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특별히 억압적인 정부임에는 틀림없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 권력의 문제는 전통적인 억압적 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사례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정부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 욕구와, 그 의지를 충실히 반영해 온 인터넷 기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실명제가 채 도입되기 이전의 시절, ‘노사모’로 대표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는 그 화려한 등장 직후인 2003년 3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명제를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12월,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가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라는 명분이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연결하는 실명확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실명제 실시에 대한 전례가 없는 데다 국가가 강제하는 실명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가운데 실제 실명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뜻은 마침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빛을 보았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공정 선거를 해치는 부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에서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의무적 국가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세계적으로 드문 주민등록번호 제도 덕분이다. 박

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소위 절차적 민주화 시절에도 견재함을 자랑하며 오늘에 이른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망 시까지 하나의 번호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번호로서 국민 개개인이 어떤 글을 썼는지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명제는 등장 시점부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적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당사자인 인터넷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해 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중의 소리’가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작은 규모의 인터넷 언론사일수록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독자 여론의 위축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항에 따른 재정적 타격은 큰 부담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를 낳아 왔다.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으로 입법화된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일반 포털에도 확대됨으로써 선거 시기를 벗어난 일상적 실명제가 시작되었다. ‘악플’로부터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명분에서였다. 2007년 7월 개정 발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실명제를 확대하였다. 2009년 4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수년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시도해 왔고, 각각의 명분은 건전한 통신문화와 사업자 재산성, 공정 선거, 악플 방지 등 그때그때 변화해 왔다. 마침내 실명제가 도입된 시점에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효력은 때마다 달라지는 개별적인 명분 그 이상의 것이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전통적으로 긴장 관계를 가져 온 국가의 검열 의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강력한 표현매체로서 각국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인터넷에서 강력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잭 골드 스미스와 팀 우는 『인터넷 권력 전쟁』에서 국가 권력은 한동안 인터넷을 관망하였으나 곧 ‘반격을 시작하였다’고 고찰하였다. 한때는 인터넷 루트 권한이 기술자 커뮤니티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미 정부 주도 하에 관리되고 있다. 기술자 집단의 저항은 제압되었다. 냅스터로 대표되는 파일 공유 기술은 한때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결국 일국적 법 체계 하에 무릎을 꿇었다.

## 신자유주의적 통제

아마도 국가 권력이 한동안 인터넷을 관망하였다면 그것은, 리처드 바브룩과 앤디 카메론이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에서 통찰한 바대로, 신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하게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는 신좌파와 신자유주의가 인터넷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유토피아주의 속에서 영합했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투쟁에 실패한 결과이다. 히피와 흑인시민권 운동은 국가 억압과 문화적 포용에 의해 분쇄되었고, 광장은 사라지고 시장만이 남았다. 인터넷 가상 계급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의 규제 완화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해 왔다. 여기서 인터넷 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으로서 완성되려 한다는 것이다.

비록 ‘가상계급’의 구성원들은 히피가 획득한 문화적 자유를 누리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에코토피아’ (히피의 이상)를 건설하는 싸움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체제에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역 대신에 이제 이 하이테크 장인들은, 개인의 자유가 기술적 진보와 ‘자유시장’의 제한들 속에서 일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받아들인다.

-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 (1994년)

인터넷 기술결정론에 대해 통렬한 그들의 비판에는 여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인터넷의 발달에 있어 국가는 부재하기는커녕 매우 비중이 큰 행위자였다. FTA와 같은 국가간 협정이나 WTO와 같은 다자적 무역체제 내의 국가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에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다만 주거권이 나 건강권 같은 전통적인 사회권 영역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관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분야에서 이들의 의무 방기와 예산 축소는,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적극적인 국가 행위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정보 상품은 7,80년대 축적의 위기를 지나오면서 자본이 새로운 상품으로 발굴한 영역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정보는 그 속성상 한번 사용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본이나 사본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정보 상품에 대한 인위적 소모성을 창출하여 교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각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과 규제 강화에 빠르게 나선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송권의 개념이 신설되었고, 기존에 비영리적 활동에서 인정되어 온 공정 이용(fair use)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은 불법적일뿐더러 비윤리적인 해적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에 있어 국가의 기능은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주요 국가들의 정부들은 앞 다투어 정보통신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정보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정보고속도로는 화상, 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디지털 신호로 통일시켜 광케이블을 통해 교환하는 종합적인 정보통신기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정책이다. 다만 전화망 사업이나 도로/철도 사업과 달리 통신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그

러나 과거와 다른 형태일지언정, 표준화 정책이나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국가의 적극적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 규제, 망중립성,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소극적일 뿐이다.

특히 국가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감시에서 한 번도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다. 국가의 의도는 기술적 형태로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철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이다. 지금 국가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통제 형태가 과거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보이지 않는 위축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chilling effect), 즉 자기 검열이다.

물론 ‘미네르바’의 사례처럼 자신이 올린 글로 인하여 형사 소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 검열은 앞서 살펴본 ‘실명제’의 형태에 더욱 가깝다. 즉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국가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실명제 효과를 둘러싼 핵심적 논란은, 정책 목표인 악플은 줄지 않았지만 정치적 반대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자신의 신원을 다 밝힌 상태에서 글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으로서는 특히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글쓰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기 검열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자기 검열은 이른바 감시 권력을 내면화하는 규율 권력의 형태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이 진정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주먹의 힘이 과시될 필요가 있다. 규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어야 내면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후 인터넷 표현물을 이유로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네티즌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공권력의 발동 과정이 살벌하게 공개된 점은 특히 시사적이다.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미네르바 개인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본 전 국민에 대한 위축 효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신 또한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할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검열은 내면의 싸움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견해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대 권력의 암묵적인 의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실제로 미네르바 체포 후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첫 사례라 할 ‘광우병 괴담’ 사건에서 실제로 경찰대학의 모 교수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수사권의 신속한 개입이 ‘냉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이며 인터넷 시대 검열 방식이다. 수사력을 동원한 체포 가능성 ‘엄포’와 ‘금지글’에 대한 압시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활발하게 동원되는 검열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인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는 12월에 있었는데, 네티즌들은 몇 달 전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당해 왔다. 이듬해 6월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네티즌이 504명, 총 선거사범 중 35.2%에 달한다. 놀라운 점은 전체 입건 건수 가운데 93.8%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이나 일반인의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렇게 경찰서에 불려 다닌 네티즌이 1천여 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선거의 장에서 추방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른 적극적 인지수사활동 전개”라고 평가하였지만, 이 수사는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2002년에 비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지나치게 조용하게 치러진 것이다. 제도언론이 입조심을 할 때도 과감한 비판과 후보자 검증을 멈추지 않았던 인터넷이 UCC가 만개하던 시절에 오히려 크게 ‘위축’되었다. 얼어붙은 인터넷은 2008년 총선 때도 풀리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대응에서 중요한 수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다. 촛불 시위가 한창일 무렵, 문화부는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하고 경찰청은 ‘인터넷 전담 대응팀’을 추진하였다. 이 조직들은 몇 달 후 비판적 네티즌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서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 등에 보고된 누리꾼

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또 이즈음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의 눈에 띄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가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까지 경찰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경찰청 보안과가 실시간 인터넷 감시시스템을 발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시스템은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엑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같은 감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 보이지 않는 경찰 국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필연적인 사건이다. 수기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수집되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수집되고 집적될 수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는 가공하여 이용하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기에도 훨씬 용이한 형태이며 그에 따른 권리 침해 역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개인정보 유출, 무단이용, 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원격 거래와 원격 행정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오용을 동시에 유발한다. 최근 온라인화에 따른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원격 거래와 원격 행정이 활발해진 것은 일정하게 국가 조직과 기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매개로 한 신원확인 요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나 그에 대응하는 신원 절차가 과거보다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은 종합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통틀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방대한 수집과 이용을 독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권리 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방대한 구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행정 서비스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제

한하기도 한다. 실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수집되어 어떻게 이용되고 제공되고 있는지 갈수록 정보주체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늘어나면 개인정보에 기초한 사람의 분류, 낙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실현되어 있는 한 개인의 정보가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고객센터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추적·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일(예컨대, 신용불량자나 취업기피인물명단의 작성·유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선택권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추진이 중지되었지만 천호동에 설치될 뻔한 CCTV가 가져왔을 효과는 성매매 여성들의 영원한 사회적 격리이다. 호주 정부가 1980년대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했을 때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도 ‘불법 이민’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소탕이었다. 최근 각국의 출입국 관리의 강화와 전자 여권의 도입 역시 테러 방지라는 명목 이면에 국제 노동력 이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감시 기술은 매우 공익적인 명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죄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CCTV를 촘촘하게 확대하고, 24시간 경찰이 모니터링한다.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팔찌를 채우고 구속 피의자와 소년범 단계서부터 DNA를 국가가 관리한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범죄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현장에서 수습한 피해자와 통행인의 DNA 역시 국가가 보관하여 평생 관리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기록을 보관한다.

국가가 인권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공공의 이익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범죄와 테러가 날로 늘어가는 오늘날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치안의 행위자를 자임하며 인권을 제한하는 감시 기술을 확대한다. 그러나 공익적인 명분 앞에서 시민은 감시에 저항하기 보다 협조한다.

범죄와 테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시장논리와 빈곤의 증대, 공동체의 파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계수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에서 지적했듯이, 타인의 자유를 제

약하고 유린하는 것을 능력의 발휘로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시장논리 때문에 도시에서 ‘일상적’인 범죄와 일탈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세계화, 경제적 격차의 증대가 가져오는 계층 간의 소통단절, 한 사회를 묶어주는 공통규범의 소멸이 위협과 범죄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얻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규범을 대신할 법적 규범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경찰의 집행력을 확대·강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국가의 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즉,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시 권력의 확대를 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안 위기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결과이다. 아니, 때로는 그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가 횡행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매일매일 경계해야 하는 처지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는 풍토는 이주민과 같은 ‘타자’의 범죄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때 CCTV와 같은 감시 기술은 공포스럽고 혐오스런 타인을 주시하여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국가 권력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둘씩 늘어난 CCTV는, 결국 경찰력의 강화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찰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신자유주의 수사학이 가장 모순적인 양태를 보이는 분야가 바로 이 경찰력의 강화이다.

과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미행이나 동태파악 등 인적 방식의 감시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같은 정보가 CCTV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수집·처리되는 것으로 인하여 달리 문제시되고 있다. 기술적 감시는 인격적 감시와 달리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훨씬 은밀하면서도 훨씬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다.

통신수단의 확대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도감청의 침해성도 과거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집과 사무실에 대한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팩스, 인터넷 메일, 패킷 감청은 물론 실시간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긴 세월 동안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발달된 통신 기법을 활용하여 대개의 감시가 원격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큰 충격을 준 것은 인터넷 패킷 감청의 실태이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신호 전체에 대한 감청으로서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패킷 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도 국내 인터넷 회선을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킷 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자감시의 가장 나쁜 점은 감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달리, 혐의를 벗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용의자가 되어 감시에 협조해야만 한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길은 일단 혐의자로 CCTV에 찍히는 것이고, DNA 채취에 협조하는 것이며, 나쁜 글을 올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일단 실명을 밝히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때로는 불쾌하지만 감시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택권의 외피를 쓰고 있는 감시 시스템은 사실 그에 대한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CCTV에 촬영되기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CCTV에 촬영되지 않고서 강남이나 서울시를 확보하거나 일할 수 없다. 전자감시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선택권의 진정한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인권 침해**

인터넷에서 국가 권력의 문제는 분명 전통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에 기존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위축 효과는 아직까지 인권 침해로서 입증할 수 없다. 국가 검열은 인권 침해로 인정되지만 그것은 주로 사전적인 규제나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서이다.

보이지 않는 경찰 국가 역시 인권 침해로서 입증할 수 없다. 범죄 예방이나 테러 방지와 같은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에 비해 감시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막연한 사생활 보호론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주체라 할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기꺼이 감시 기술의 도입을 찬성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 반대할 명분은 상당히 약해진다. 실제로 강남구 주민들의 80%가 CCTV 도입을 찬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CCTV에 촬영되는 대가로 자기 재산에 대한 안

전을 보장받길 원한다. 개인정보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인 것이다. 감시는 폭압적이기 보다 자발적인 협조 속에 다가온다.

억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에 대한 저항도 쉽지 않다. 정보인권에 대한 진보 진영의 관심은 아주 미미하다. 특히 억압적 기술의 도입이 공익적 명분을 띄고 있을 때 대항 논리는 더욱 궁색하다.

해법은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악플 방지나 범죄 예방 등 국가 권력을 호출하는 개별 사건의 중립적 명분을 넘어서서 국가 권력과 그 기술의 경향성을 예민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CCTV 논쟁을 겪었던 영국의 경우 ‘범죄 이전’ 효과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분명 CCTV는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율은 저하시켰지만 국가 전체적인 범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결국 범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범죄 이전 효과가 ‘청정 구역’ 과 ‘우범 지역’ 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CTV는 곧 신자유주의 영국 사회에서 사회 계급의 분리와 양극화 현상의 한 지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효과야말로 범죄 예방에 대한 CCTV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 권력의 작동방식이자 그 기술의 기능이다.

다시 사이버 망명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사이버 망명은 국가로부터 탈출했는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였던 초국적 네트워크가 다양한 법제도와 침해적 장치로 점차 국가에 포섭되고 있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패킷 감청으로 구글 메일까지 다 읽히는 상황에서라면 인터넷 초기 낙관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서던 그 땅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영토일 뿐이다. 국가로부터의 탈출이 국제적 상업 자본으로의 포섭인 셈이다. 구글 역시 한국의 소비자에게 그 점을 정확히 의도하였을 것이다.

물론 사이버 망명의 조소 효과는 높이 평가한다. 조소에는 적어도 실명제 확대의 정치성을 폭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소가 힘을 가지려면 그 이후로도 저항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국가에 이미 포섭되어 있는 포털의 공간을 벗어나, 다국적 자본의 판매대를 벗어나 지속적인 탈출을 꿈꿀 줄 알아야 한다. 악플을 방지한다는 공익적 명분을 넘어 국가 권력이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피하고자 하는 억압적 효과를 통찰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실천할 때이다.

## 진보 진영의 진지가 되련다<sup>67</sup> - 개편한 진보넷의 소망

덩야핑 (진보네트워크센터)

### 왜 만들었지?

많은 운동 단체들이 대중을 만나기 위해 포털을 찾는다. 운동의 창구는 많을수록 좋고, 포털의 이용자와의 접촉면을 가능한 한 늘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진보 진영의 독자적 네트워크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상업 네트워크망에 대한 국가적 감시와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목소리부터 웹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 운동의 시장질서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운동의 연대를 결집시킬 공간이 필요하며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각 수요의 이유는 달라도 필요만은 일치했다.

‘소통과 연대를 위한 진보넷’ 이라는 타이틀처럼, 진보넷은 운동과 개인을 연결-결집하고 자체적 서버 구축과 메일, 블로그 등을 통해 검열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웹상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개편 전의 진보넷 첫 페이지는 단체 홈페이지 링크와 진보광장란의 진보달력, 속보,

---

67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66호 ‘미디어 현장’ 에 실린 글입니다.

활동가 구인구직란, 참세상의 최근 뉴스와 배너 등으로 단체 사이의 통로를 일정 부분 마련해 놓았다. 그러다 올 초 검색기능을 보강하면서 검색 유도를 위해 첫 화면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 진보광장을 전면 배치하지 않고 링크로만 처리했다.

지금도 여전히 검색은 중요하다. 진보진영의 수많은 운동의 내용과 성과가 이미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지만, 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 검색은 자료들을 연결하고 찾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뿐 아니라 운동 대중에게 활용가치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그 자체로서 운동이 될 수 있다. 또 운동과 운동 사이를 연결할 때도 유용하다. 같은 태그(운동의 키워드)를 가진 글들을 엮어서 관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서려면 검색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진보광장 - 속보와 일정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단체 관계자들만 방문할 뿐인 고립되어 존재하는 홈페이지들을 연결(링크)하고, 소수자 운동 담론과 이슈에 대응하려는 블로거들에게 담론을 확장할 공간도 필요했다.



개편 전 진보넷 첫 페이지에는 단체나 개인들의 여러 가지 링크가 모여 있었지만, 운동 진영의 여러 의제를 나누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현재 의제를 볼 수 있으며 저항적 콘텐츠를 생산해 낼 채널을 만들었다. 각 의제에 대한 검색글과 그것을 본 이용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서, 각 단체 혹은 개인은 자신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운동을 선전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운동 간의 접점을 찾아 공동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을 연결함에 더해 운동 대중을 만날 수 있다면 단체들이 포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타개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획 중 하나가 위젯이다. 진보넷에 오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해 운동 진영의 내용에서 검색된 자료들과 의제들을 들고 외부의 사이트에 찾아갈 수 있게 하려 한다.

요약하면 검색을 통해 진보진영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연결(링크)하고, 채널을 통해 진보진영의 현재 의제를 공유-확장하며, 위젯을 통해 진보진영의 의제를 가지고 진보넷 바깥의 대중(네티즌)을 만날 수 있도록 진보넷을 개편한 것이다. 여러 운동이 생겨나고 섞이고 어우러져 뻗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조직도(!) 하고 : 검색**

진보넷 검색은 등록된 RSS에 기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RSS는 블로그 등 사이트의 메타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표현 방식이다. 한 사이트의 RSS를 구독하면 굳이 그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최근 업데이트된 글의 제목과 요약문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단체 홈페이지에서 RSS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 교육을 통해 RSS 발행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진보넷 검색은 저항적 콘텐츠들을 모아서 볼 수 있으며, 검색 결과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낚시성 글이나 광고로 도배된 검색결과를 볼 일은 없다. 반대로 검색 소스가 적어서 검색 결과가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대된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각 개인들이고, 검색은 웹상의 사서처럼 자료를 링크(연결)하는 것이다. 누구나 직접 블로그 등 사이트의 RSS주소를 등록하여 검색자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덧붙여, 진보넷에 방문하지 않아도 브라우저를 통해 간단히 검색할 수도 있다. 이 기능은 파이어폭스와 IE에서만 제공된다. (자세한 설명은 진보넷 블로그에 있는 안내 참조.)



▲ 개편된 진보넷 1번 채널, 테이프로 이슈를 쉽게 붙이는 걸 형상화

## 채널

채널은 주제별 글 모음란으로,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검색으로 엮어서 보여주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진보넷 첫 화면(<http://www.jinbo.net>)은 여러 채널의 검색글과 그에 대한 코멘트의 링크로 구성된다. 개설자는 추천글을 첫 페이지에 고정시킬 수 있는데, 노출 시간이 긴 만큼 추천글의 조회수가 가장 높다. 채널이 진행되는 2주 동안 개설자는 언제든지 추천글과 키워드를 바꾸며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키거나 집중시키는 등 편집자로서 채널의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처음에는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토론장을 고안하였다. 게시판 토론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가 일정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트형 게시판은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한 번 해야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즉각적으로 글을 읽고 쓰기에 부족하다. 좀 더 가벼운 글쓰기/읽기를 가능하게 하고자 블로그나 트위터처럼 본문을 바로 읽을 수 있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글자 수 제한이 있는 단문형 글쓰기는 지양했다. 그래서 게시판 중 '포럼' 형식을 많이 참조했다. 포럼은 원 글과 덧글의 위계 구조 없이 순서만 있을 뿐 모든 글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전체 글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여기다가 리스트로만 글을 볼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친숙한 게시판 형태도 유지했다.

그러나 오픈 이후에 '토론'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코멘트로 형식을 바꾸었다. 일단은 최대한 부담 없이 글쓰기를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진중한 토론을 배제

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글을 쓸 수 있게 글쓰기 창이 스크롤을 따라 이동하도록 만들어 적극적인 반박-토론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채널에서 글을 직접 쓰지 않아도 블로거는 트랙백을 통해 채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다.

## 위젯

아직 채널은 진보넷에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맞이할 뿐이지만 운동이 되려면 채널을 가지고 진보넷 바깥의 다른 공간에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젯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은 배너가 운동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쉬로 만든 화려한 배너들이 선보였지만, 배너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얼마나 활발히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는 보여줄 수 없다. 위젯은 채널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검색글과 토론글의 업데이트 현황을 나타낼 작은 창으로, 퍼가기도 쉬우며 블로그, 홈페이지 등 어디에나 붙일 수 있다. 운동에 공감하는 블로거들과 위젯 달기 운동을 해서 의제를 퍼뜨리고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첫 화면 구성

각 채널이 모인 진보넷 첫 화면은 최신 검색글이 풍부한 것이 1번 채널로 올라간다. 뉴스보다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검색결과가 많은 것, 코멘트 개수 등을 점수 계산하여 가장 활성화된 채널이 자동으로 추출되므로 1번 채널은 주기적으로 변하고, 그만큼 다양한 이슈가 공유된다.

또 현장에서 전하는 실시간 속보란과 사회단체 활동가 구인구직란, 활동 소식 공유란 등을 뒤 운동 간의 연대를 꺾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들을 위한 배너 공간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때그때의 주요한 이슈를 위해 내가 계속 만들고 있다. 350 \* 110 사이즈로 많은 신청 바라며, 배너 신청이 많아지면 페이지를 새로고침 할 때마다 다른 배너가 뜨도록 할 계획이다.

## 계속될 개편과 비법

진보넷은 국가적 통제와 감시에 저항하는 대안적인 담론이 소통되는 대표적인 미디어 공간을 꿈꾸면서도, 고립되지 않기 위해 포털을 포함한 주류 미디어와 유연한 콘텐츠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 진영의 콘텐츠를 상업미디어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상업 미디어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과 전술을 축적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젯을 개발하고 진보넷의 다른 사이트도 개편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블로그 개편의 핵심 중 하나가 액션을 조직화하기 위한 진지로서의 팀블로그이다. 단순히 여럿이서 쓰는 팀블로그와는 다른 의미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개설된 채널들이 장기적 운동으로 이어질 때 팀블로그가 유용할 것이다.

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검색에 있어 좀 더 특화된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를테면 진보진영에서만 생산되며, 대중에게 어필하기에 적합한 재료는 무엇인가? 진보적 관점으로 생산된 영화와 책에 대한 양질의 리뷰를 특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인터넷 시장에서 진보넷이 돈과 플랫폼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개인과 단체들과 함께 운동과 관계를 생산하며 메타이며 관계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 개편한 진보넷이 한 줄 짜리 인사에서 장문의 비판까지 다양한 글들이 오고 가며 각 운동의 진지가 연결되고 또 고립되고 분산되었던 개인들이 서로 발견하고 엮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Section 11.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불편하게 살자!!! (이종희) · 68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10대 뉴스 · 70

2009 - 진보네트워크센터 · 76

## 불편하게 살자!!!

이종희 (진보네트워크센터)

올해 2월 하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니 알아서 움직이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 뿔싸! 아들 학교문제로 시골을 다녀오다 마침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였다. 계속되는 속도측정기라는 CCTV가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전화를 끄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 아들이 가지고 있던 전화도 끄게 했다. 그리고 나니 하이패스가 걸렸다. 이거야말로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싫어 일단 끄고 나니, 고속도로 진입할 때 췌으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서울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서 내려 국도로 올라갈까 아님 그냥 끝까지 가볼까 궁리를 하다 결국은 서울 톨게이트로 나왔다.

시내에 접어들어 어찌어찌해서 차를 넘기고 처음 알려준 이에게 연락을 해보니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발부는 조금 더 걸릴 것이라 한다. 그래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다보니 다른 이에게 부담과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일단 부담도 없고 쉴 만한 곳을 찾아 찜질방으로 향했다. 설마 했는데 옷 벗고 들어가는 찜질방에까지 CCTV가 버젓이 달려있는 걸 보고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을 만나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핸드폰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니 요금단말카드가 마음에 걸린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궁리 끝에 결국은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들어갔다.

영안실에서 웹서핑도 하고 자료도 주고받곤 하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하곤 했다. 수배된 범대위 두 공동집행위원장이 사용하는 회선이라 패킷감청을 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웹서핑부터 메일 주고받으려면, 범대위 자료부터 심지어는 영화를 한편 내려 받아 보는 것까지 스스로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쓰는 핸드폰도 번호를 공개

하지 않아 말이 비폰이지 결국은 전파로 잡아낼 것이라는 판단에 일정정도 지나서는 아예 내놓고 사용하고 있다. 수배 10개월 가까이 영안실과 명동성당에 들어와 있는 동안 내 차는 수없이 검문을 받았고, 경찰과 운전자는 이종희다 아니다 소리 높여 실랑이를 벌였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차마다 휴대용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차량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가끔씩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집회사진을 각 경찰서 정보과에 보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찾아내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사진으로 사람을 찾아낸다고 한다. 이제 슬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데 장례를 지내고 나면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을 텐데, 그래도 진보넷 대표가 지문날인을 할 수도 없어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 유전자 DB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대상이 안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궁리를 해보곤 한다.

80년대 중반에 2년여 수배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사람만나는 것을 조심하기만 하면 안전의 반 이상은 보장이 되었다. 그래서 만남은 다방 같은 곳을 포스트로 뒤 쪽지로 하거나 인편을 통해서 하고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었다. 수배된 사람이 두 번 연속 나타나지 않으면 다 튕다든지, 소설에서나 나올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긴장과 낭만(?)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듯한 기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긴장이다 보니 도망 다니는 재미가 없다. 이게 IT선진국 한국에서의 수배생활의 일상이자 고충이다.

가장 민감한 수배자에게 다가오는 일상이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을 무심코 흘리며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편하다는 것으로 묵과되고 이용된다. 인터넷 독립선언이 나올 만큼 장밋빛 청사진을 그릴 때도 있었지만 기술진보의 결과에 대해 특히 촛불정국 이후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를 낙망케 한다. 물론 과학기술의 민중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력과 투쟁이 이어져야겠지만 가끔 기술진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져보곤 한다. 그래서 그 역시 대학교수였지만 대학교에 폭탄을 배달하던 이른바 유나바머를 이해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생태주의자들은 서구적 담론에서의 문명, 마르크스의 생산력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관계를 우선하는 사회주의로의 전화를 얘기한다. 그리고 ‘자발적 가난’을 얘기한다. 진화론, 과학기술의 진보 등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즈음 우리는 ‘자발적 불편’ 즉 ‘불편하게 살자’를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싶다. 용산참사 다섯 열사분들을 양지바른 곳에 모시고 감옥을 다녀오면 카드, 핸드폰 없이 지내보는 것은 어떠할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다.

#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10대 뉴스

편집자 :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여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경찰·검찰·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법률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저작권, 특허, 표현의 자유, 감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대안미디어, 독립네트워크 등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가운데 2009년을 특징짓는 사건·사고를 추려보았다. 작성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순서는 무순이다.

## 용산참사

지난 2월 4일 새벽, 용산 세입자들의 생존권 주장에 경찰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투입으로 화답하였고, 유감스럽게도 5명의 고귀한 삶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참사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모르쇠 대응 속에서, 고인과 유족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서 추운 겨울을 다시 맞이하였다. 참사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진보넷은 반나절 만에 추모페이지를 제작, 여러 사회단체들과 추모페이지를 각 단체 홈페이지의 대문으로 공동 운영하여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추모페이지를 용산범대위 공식 홈페이지로 개편 기증한바 있다. <http://mbout.jinbo.net/>

## 압수수색과 패킷 감청으로 위기에 처한 통신비밀

올해는 인터넷 압수수색 소식이 많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4월 24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 명의 최장 7년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6월에는 쇠고기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보도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김은희 작가 등 관련자의 7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연이어 7월에는 YTN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고 8월에는 경찰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25명의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서버도 예외 없이 압수수색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주경복 교육감 선거 후보 수사, 용산 참사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수사, 철도노동조합 파업 수사 등 공안의 바람이 불 때마다 수사기관들이 진보네트워킹센터를 찾아왔다. 다만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IP주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진보네트워킹센터 운영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1998년 창립 이후 몇 년에 한번 겪을까 말까 했던 압수수색이 올해 몰아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결코 무관치 않다. 이 사건들 이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구글의 지메일 등 해외 이메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러쉬가 일어났다. 그러나 지난 8월 진보네트워킹센터와 여러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국가정보원이 오랫동안 패킷 감청 기술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내 인터넷 회선이 통째로 감청당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통신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건은 인터넷 압수수색과 감청을 규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제도의 개선과 정보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데 있다. 또한 진보네트워킹센터처럼 독립적이고 저항적인 네트워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더 많은 사회적 힘이 모여야 한다.

## 7.7 DDoS공격

지난 7월4 미국 주요사이트 공격을 시작으로 7월7일부터 국내 주요 포털 및 국가기관에 대해, 일명 '제2차 인터넷대란' 또는 '7.7 DDoS 공격'이 총4차례 걸쳐 발생했다. 특히 주요 관공서, 은행, 주요 포털만을 타겟으로 한 점에서 핵티비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DoS 공격의 의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IP 등을 이유로 국정원 등이 앞장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라는 공포감을 조성,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는 사상최대의 보안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안 시장의 확대될수록 보안장비는 많아지겠지만

만,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사실상 감청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감청기술시장의 확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상의 공공민관 영역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인터넷망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감시기술의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담으로 진보넷 서버관리자도 그 즈음 계속되는 공격에 서버들 돌보느라 잠도 못자고 매달려야 했는데 신기하게 DDoS 공격이 멈추자 진보넷 서버들도 멀쩡해졌다.

##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의 위상에 맞게 회원 체계 재정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 '독립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998년 출범하였고, 10년 동안 웹메일, 메일링리스트, 웹커뮤니티, 웹호스팅,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진보넷의 전신인 'PC통신 참세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사업자(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했고, 네트워크 서비스도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공하는 '부가통신 서비스'라는 형식을 취해왔다. 2009년 3월 6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형식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웹호스팅 서비스는 폐지하고, '사회운동의 공동 네트워크'의 운영 단위로써 회원에게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원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회원 담당자가 대오 각성하여, 진보넷의 따근 따근한 소식과 함께 유출되면 안 되는 뒷얘기를 전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2일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No.0'을 시작으로,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2회, 네트보살 극락정토 4회가 발송되었다. 일부 마니아층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회원 뉴스레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길.

[http://act.jinbo.net/webbs/list.php?board=act\\_newsletter](http://act.jinbo.net/webbs/list.php?board=act_newsletter)

## 디지털 악마들의 영화제<다운로드 해적들> 개최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 23일 시행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 번 경고를 먹으면 인터넷에서 축출(OUT)하겠다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감명 깊게 본 영화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삭제조치 및 게시판 차단 명령이 내려지고, 1천만 원의

합의금 요구가 빗발치는 살벌한 IT강국 대한민국. '디지털 악마' 취급을 받는 이 땅의 해적들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8월 18일 "디지털 악마들의 영화제, <다운로드 해적들>"을 개최하였다. 서울 명동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된 본 영화제에서는 해적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훔쳐갈 수 있도록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제작 소스를 오픈한 애니메이션 2편과 다큐멘터리 1편을 상영되었다. 상영된 작품은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10분 54초, 2006년),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http://act.jinbo.net/wiki/index.php/매삼화\\_with\\_진보네트워크센터](http://act.jinbo.net/wiki/index.php/매삼화_with_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강좌 웹기술 공유강좌 등 진행

올해 진보넷은 주변 단체 활동가들과 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강좌활동을 진행하였다. 9월에는 정보인권의 주제들을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10월부터는 웹표준에 기반한 웹문서를 제작하는 법을 나누는 강좌를 진행하였다. 평상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알아보기에는 뭔가 전문적인 내용들을 진보넷 활동가들이 쉽게 풀어내주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의 문제는 변비와 아락실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설명과 토론을 하고, 기술 강좌도 기초적인 HTML 태그부터 배우면서 단체들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는 뉴스레터 만들기 등을 실습하면서 진행되었다. 올해 강좌는 이 정도로 마무리 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은 강좌를 기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보넷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나눔 들은 다시 진보넷을 살찌우는 자양분들이 아닐까.

## 특허 독점 : “인간보다 이윤을”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는 특허 독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는 HIV/AIDS에 대한 치료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특허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의약품의 특허독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2001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

백(Glivec),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HIV/AIDS 치료제 푸제온(Fuzeon),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조류 독감의 유행과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판데믹(pandemic) 선언 이후 터져 나온 타미플루(Tamiflu)의 공급 부족 사태 등은 특허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비단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 독점을 무기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의 한계로 인해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실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년간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 **전자여권에서 지문 다시 삭제 그러나 지문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 여전히 남아있어**

많은 인권단체들이 반대했지만 MB의 미국방문에 맞추어서 통과되었던 전자여권 개정안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효과로 1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처음의 개정안은 전자여권에도 소지자의 지문을 전자화하여 저장한 후, 출입국심사대에서 지문날인을 이용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즉,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랑 일본에서 불필요하게 지문 찍어본다고 항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지문도 찍어서 내보냅니다. 필요하면 신체검사 한 번씩 돌려주세요” 라고 스스로 홍보하는 꼴이었다. 다행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진보넷 등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위와 같은 계획은 2010년으로 유예되었고, 그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제 전자여권에 지문이 수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 개정안도 여전히 여권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지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단 법안 상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에서는 국가기관이 본인확인을 할 때는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여권 발급 시 지문날인을 요구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불쾌하다면 저항하라! 권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올해 벽두에 일어났던 미네르바 체포 구속 사건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한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이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이 인터넷 논객이 겪은 고초는 네티즌들의 비판 의지를 꺾었고 정치 토론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4월 9일 구글이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식을 택하여 놀라움을 주었다. 지난 해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4월부터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된 터였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의 모든 국내 사이트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였다. 한국 정부가 굴지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 구글에게 한방 먹은 점이 고소하면서도 안쓰럽다. 10월 방한한 프랭크 라튀 유엔특별보고관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전세계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로서는 힘겹게 끌어왔던 실명제 반대 싸움과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고 올 2월 제기한 실명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 놀러와! WWW.JINBO.NET

소통과 연대의 채널, WWW 진보넷 첫 화면인 [www.jinbo.net](http://www.jinbo.net)의 거대 공사가 수차례 있었다. 2009년 초 검색 기능을 도입하며 심플한 검색 사이트를 1차 개편으로 선보였으며, 그 후 진보넷을 진보적 담론의 유통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반년의 기획과정이 있었다. 그 결과 진보적 이슈를 추적, 토론할 수 있는 ‘채널’ 과 배너, 속보, 구인 구직란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소통 공간’ 을 핵심으로 한 2차 개편을 완료하였다. 채널은 주제별 글 모음란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검색으로 엮어서 보여주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설자는 키워드를 조정하고, 검색 소스를 변경/등록하고, 좋은 글을 추천/운영하는 등의 채널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반 유저들은 채널에 들어가서 운동 사회의 여러 이슈들의 현황과 최근 각광 받는 주제는 무엇인가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차 개편 이후 뒤 메뉴에 탭을 도입하고 각 채널의 rss를 발행하는 등 비교적 소소한 개편이 단행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부가기능을 개발하여 진보넷 외부의 여러 사이트들에 위젯을 달아 진보넷 채널에서 여러 이슈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2009 - 진보네트워크센터<sup>68</sup>

## ■ 1월

2009년 1월 7일~28일 :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2009년 1월 9일 :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2009년 1월 13일 :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2009년 1월 27일 :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 2월

2009년 2월 1일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재판에 탄원서 제출

2009년 2월 2일 : <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2009년 2월 17일 :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2009년 2월 19일 : <성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2008년 2월 25일 :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2009년 2월 25일 : <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9년 2월 27일 : <성명>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 시도 규탄한다

---

68 <http://act.jinbo.net/wiki/index.php/2009년>

위의 페이지에서 각 일정별 페이지 및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월

- 2009년 3월 4일 :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2009년 3월 4일 :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 2009년 3월 6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정기총회  
<http://center.jinbo.net/emeeting2009/>
- 2009년 3월 12일 : 〈논평〉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 2009년 3월 17일 : 〈성명〉 조희수 조작 명분으로 정부 비판 누리꾼 수사 중단하라
- 2009년 3월 25일 :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 4월

- 2009년 4월 1일 : 액트온 제5호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 2009년 4월 7일 : 〈보도자료〉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 2009년 4월 7일 : 〈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 2009년 4월 9일 :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 2009년 4월 14일 :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 2009년 4월 15일 : 〈발표자료〉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 2009년 4월 15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년 1차 운영위원회
- 2009년 4월 16일 :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09년 4월 20일 : 〈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2009년 4월 20일 : 〈기자회견〉 “내 폰에 도청장치, 문자도 국정원이 봅니다”
- 2009년 4월 20일 : 〈성명〉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2009년 4월 23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청회

2009년 4월 24일 : <성명> 도를 넘는 이메일 압수수색 한다!

2009년 4월 24일 : <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하여

2009년 4월 29일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2009년 4월 29일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공청회

## ■ 5월

2009년 5월 11일 : <논평>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2009년 5월 13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2009년 5월 15일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 공술문

2009년 5월 16일 : <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9년 5월 19일 : <기자회견>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2009년 5월 22일 : 진보네트워킹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 ■ 6월

2009년 6월 9일 :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백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2009년 6월 15일 :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 굶나잇 앤 굶럭

2009년 6월 16일 : <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2009년 6월 16일 : <기자회견> 글리백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2009년 6월 19일 : <논평> 치사한 검찰의 피의자 이메일 공개

2009년 6월 19일 : <성명> 민간사찰마저... 막나가는 국정원

2009년 6월 22일 :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

2009년 6월 22일 : <뉴스레터>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No.0

2009년 6월 23일 : <토론회>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2009년 6월 23일 : <기자회견>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2009년 6월 25일 :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2009년 6월 30일 : <뉴스레터> 네트보살 극락정토 1호

## ■ 7월

2009년 7월 1일 : 미디어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3일 : 뽀뽀한 미디어농장 1차 포럼 - 정치 예술과 미디어 행동주의의 만남

2009년 7월 9일 : <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2009년 7월 15일 : <뉴스레터>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No.1

2009년 7월 16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년 2차 운영위원회

2009년 7월 16일 : 뽀뽀한 미디어농장 2차 포럼  
- 오늘날, 사이버 해킹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9년 7월 17일 :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9년 7월 21일 :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2009년 7월 23일 : <성명>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2009년 7월 27일 : 진보블로그 5주년 파티 in 용산

2009년 7월 29일 : 뽀뽀한 미디어농장 3차 포럼  
- 촛불, 용산참사, 그리고 미디어행동주의의 미래

2009년 7월 31일 : <뉴스레터> 네트보살 극락정토 2호

## ■ 8월

2009년 8월 11일 : <성명>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2009년 8월 18일 : 매삼화, 네번째 상영회 : 다운로드 해적들

2009년 8월 18일 : 뽀뽀한 미디어농장 4차 포럼  
- 촛불, 문화정치, 그리고 미디어 저항의 방법론

2009년 8월 21일 :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2009년 8월 22일 : 뽀뽀한 미디어농장 5차 포럼 -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예술행동

2009년 8월 25일 : <논평> KT는 한국 인터넷의 빅브라더가 되려 하는가

2009년 8월 27일 :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09년 8월 31일 : <기자회견>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2009년 8월 31일 : <뉴스레터> 네트보살 극락정토 3호

## ■ 9월

2009년 9월 8일~29일 :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2009년 9월 14일 :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17일 : 뻔뻔한 미디어농장 6차 포럼 - 오늘, 독립 네트워크를 다시 생각하다

2009년 9월 17일 :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2009년 9월 21일 : 액트온 제6호 - 저작권 삼진 아웃제? 삼진 아웃!

## ■ 10월

2009년 10월 12일 :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2009년 10월 20일~11월 12일 : 2009 웹 기술 공유강좌 (1차)

2009년 10월 29일 : <논평> 패킷 감청의 실태, 조금 드러났지만...

## ■ 11월

2009년 11월 4일 : <논평>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2009년 11월 4일 : <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

2009년 11월 12일~14일 : ONI Workshop 참가 (이집트)

2009년 11월 14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11주년

2009년 11월 15일~18일 : Internet Governance Forum 참가(이집트)

2009년 11월 17일 :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09년 11월 18일~12월 21일 : 2009 웹 기술 공유강좌 (2차)

2009년 11월 19일 : DNA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2009년 11월 26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년 3차 운영위원회

2009년 11월 30일 : 〈뉴스레터〉 넷보살 극락정도 4호

## ■ 12월

2009년 12월 1일 : 〈기자회견〉 글리백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2009년 12월 1일 :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2009년 12월 14일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ella 4hacke bright igoomy ikd01 next421 **positro**

nenmai **wangkm** twofus shincl eeseob\_n mari supul2

SHHA kambe anggoo10 **peacepia** Hserin tae21 may

**jinbo13** delphy action horong arcase meiste rainme

young82 redgan damon abird33 seapear underis **anbada01**

angle tsn eejoon **homin99** nojisimi

이 분들의 뒤를 이어 후원회원이 되고싶으시면...

쌀을 주셔도 되고,  
반찬을 주셔도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을 주셔도 되고, 알콜(?)을 주셔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으랏차차 기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메일링리스  
트와 호스팅계정**, 즐겁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 <액  
트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립 영화관 할  
인 및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http://center.jinbo.net/member/new.php> 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예금주 진보네트워크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

보화 시대가 진행되지 10년.

이는 것, 그 모두가 기록되는 감시사회로 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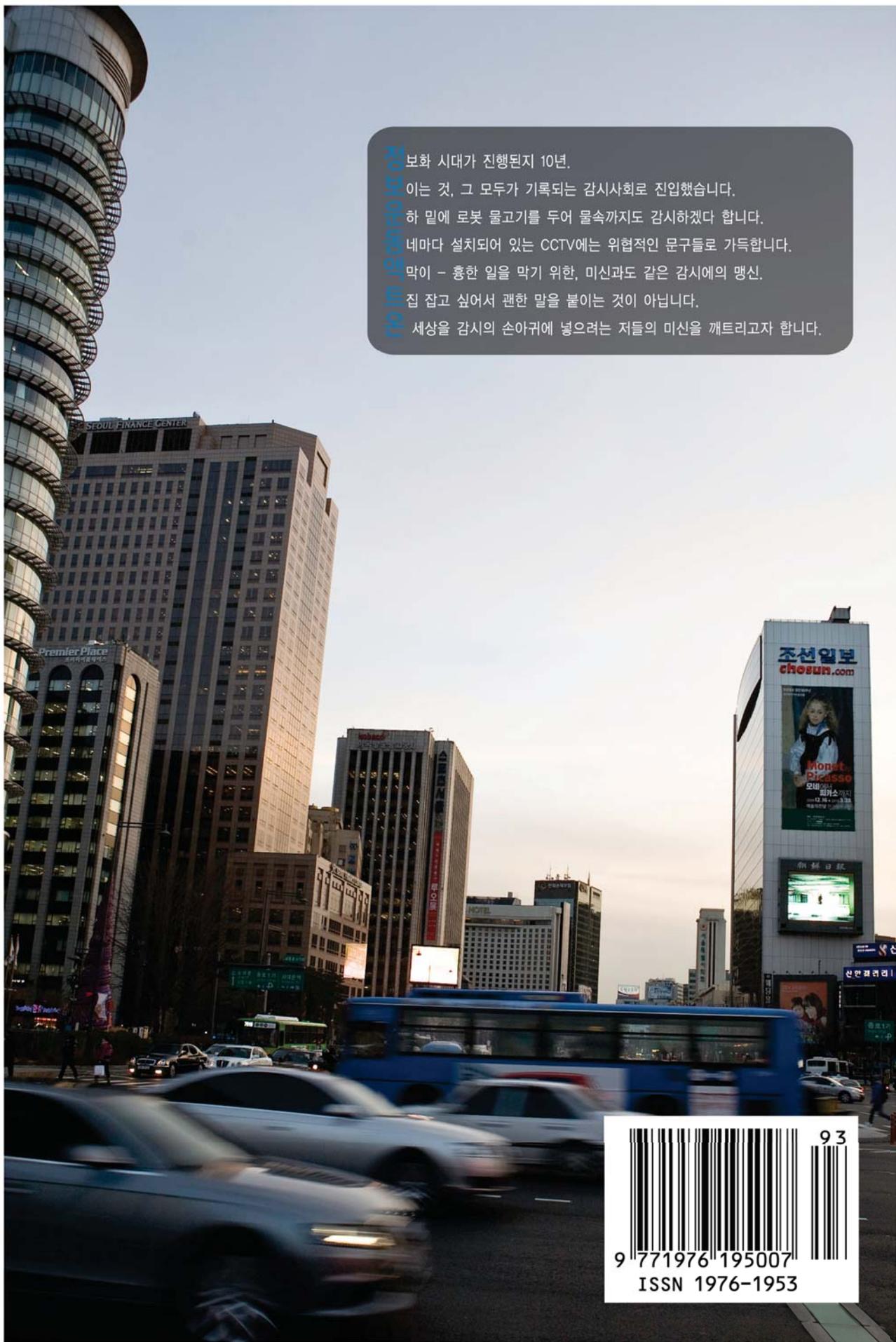
하 밑에 로봇 물고기를 두어 몰속까지도 감시하겠다는 합니다.

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협적인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막이 - 훔찬 일을 막기 위한, 미신과도 같은 감시에의 맹신.

집 잡고 싶어서 괜한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시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저들의 미신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93

9 771976 195007  
ISSN 1976-1953